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 운영 지침

2026. 1



성평등가족부

순 서

I . 사업 개요	1
II . 단계별 업무 처리 지침	3
1. 수당 신청 및 접수	3
2. 지급 결정 및 수당 지급	7
3. 수급자 관리	10
〈참고〉	16
1. [서식1]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17
2. [서식2] 퇴소자립지원 신청 관련 자립계획서	19
3. [서식3] 지원시설 입·퇴소 확인서	20
4. [서식4]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관련 통지서	21
5. [서식5] 퇴소자립지원수당 선정심사 기준(예시)	23
6. [서식6] 퇴소자립지원 관련 이의 신청서	24
7. [서식7] 퇴소자립지원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	25
8. [서식8] 지원시설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26
9. [서식9] 지원시설 퇴소자 사후 관리서	27
10. [서식10]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28
11. [참고] 국민연금공단 재무 상담 서비스	29

I. 사업 개요

가. 목적

-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에 기여

나. 법적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다. 대상자

-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됨
-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 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라. 지급 금액 및 방식

- 매월 1회 50만원, 최장 12개월 간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이체)
-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서울 50%, 지방 70% 국비 지원)

마. 사업 진행 절차

신청(퇴소자) → 추천(지원시설) → 접수 및 심의(관할 시·군·구, 선정심사위)
→ 결정·통보(관할 시·군·구) → 지급(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 수급자
관리(관할 시·군·구 및 지원시설)

* 관할 시·군·구 및 시·도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단계	내용
입소자 대상 사전 안내 (지원시설)	· 지원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제도 안내 및 자립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신청 및 추천 (신청자· 지원시설)	· (신청자) 수당 신청서 등 작성 및 추천 요청 · (시설)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또는 지원시설 관할 시·군·구에 추천
접수 및 결정 (관할 시·군·구)	· (접수)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시설 관할 지자체에서 추천서류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이송 처리 · (심의)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시·군·구 內 위원회 자체 설치) · (결정)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결정
통지 (관할 시·군·구)	· (통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 및 지원 시설에 결정사항을 통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수당 지급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 (담당) 신청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 예산 배정 및 행정 여건 등을 고려,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영 · (지급) 매월 1회 50만원, 최장 12개월 간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수급자 관리 (관할 시·군·구 및 지원시설)	· (지자체)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자격변동 관리)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등을 통해 수급자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관리 · (지원시설) 수급자 수당 신청 당시 (퇴소)지원시설 - (사례관리) 자립생활 지도, 기타 정보 제공 등 자립지원 - (기타) 수급자격 관련 변동 사항을 확인한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고, 수급자에게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

II. 단계별 업무 처리 지침

1 수당 신청 및 접수

가. 지급 대상

1)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2) 자격 요건 등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됨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다음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 퇴소자립지원수당은 1인당 1회 지원(결정)되고, 취업 또는 대학 입학 등으로 인해 조기 퇴소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자도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수당 신청 시 관련 증빙 제출 필요
-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음을 의미하며, 지원시설 간 이동한 경우에도 연속해서 보호 받은 것으로 간주
- **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경우, 퇴소자립지원수당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퇴소 시에 신청·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 자립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 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 신청 기한

- 지원시설 퇴소일(‘월’ 기준)으로부터 2개월 이내

* 퇴소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나, 수당 지급은 퇴소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되며, 퇴소 직후에는 실제 퇴소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 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

예시) 퇴소일이 7월 25일인 경우, 퇴소한 달은 7월이므로 9월 말까지 신청

※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전 연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따라서 연말 퇴소 예정자의 경우, 퇴소한 달에 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수당 신청 및 지급결정 통보를 받아야함.(단, 예외적으로 학업·취업 등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연말에 긴급히 시설 퇴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전 연도 수당 지급 가능)

○ 기타 사항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수급자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산정 시, ‘퇴소 자립지원수당’은 관련 소득·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

나. 수당 신청

1) 신청 서류 작성(신청자)

- 신청자는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시설에 수당 지급을 위한 추천을 요청
 - * 신청 서류: 신청서, 입·퇴소확인서,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자립계획서, 사후 관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
- 지원시설은 입·퇴소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확인서 등 제반 서류 준비 등을 지원

2) 추천(지원시설→ 관할 지자체)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 후, 지원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추천

< 신청 및 추천 시 제출 서류 >

1.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서식1)
2. 자립계획서(서식2)
3. 지원시설 입·퇴소 확인서(서식3)
4.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 *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참고)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저축·자산형성 방법 등 재무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후 확인서가 발급됨.(비대면 방식)
5. 지원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 동의서(서식8)
6. 주민등록등본
7.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8.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자격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주의 사항

- 지원시설에서 관할 지자체에 추천 시, 공문 형태로 추천·제출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변동 여부 확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수급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적금·청약통장 등 제외)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통장 사본' 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금계좌 확인 가능

다. 신청 접수

- * 신청 접수 및 결정·관리 등은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경우 신청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신청자 주소지 시·군·구로 이관**

1) 신청자격 등 확인

- 접수서류 및 신청자 인적사항 등 확인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2) 신청 접수 시 안내사항

- (처리 기한) 신청(추천)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통지 방법) 서면 통지(우편) 원칙,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e-mail), 문자 메시지(SMS)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신고의무)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가 변동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수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
 - * 수급 자격 관련 정보 변동 예시: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주소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수용시설 입소 등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0조

< 변경 사유 발생 시 신고 방법 >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 관련 증빙서류
 - * 수급계좌 변경 시 퇴소자립지원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7) 제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가 된 경우 수급권 상실 신고한 것으로 같음

<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 본인 사망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
- 국적 상실 : 「국적법」 제16조에 의한 국적 상실자의 처리
- 90일 이상 국외체류 : 출입국 시 국내 여권을 사용한 경우
 -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국외체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

- (정보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퇴소한 지원시설 등 사후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제공
- (수당 환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사망 시 지급 등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
- (수급 계좌)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수집된 정보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지급 결정 후 수급권 상실 뿐 아니라 지급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정보 보유

2 지급 결정 및 수당 지급

가. 지급 결정 및 통지

1)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시·군·구 내에서 위원회 자체 설치)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시·군·구의 성매매·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시설협의회의 임직원으로 구성함(위원장은 호선)
 -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단, 공무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한함
 -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선정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개최 여건에 따라 서면심사 가능

- 심사위원회는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 충족 및 지원 필요성 등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월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별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 기준 등
 -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서식1), 자립계획서(서식2), 시설 입·퇴소 확인서(서식3), 사후관리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서식5](예시)를 참조하여, 각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2) 지급 결정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자격 확인 절차 >

- **(확인 주체)**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 **(확인 사항)** ① 입소 및 사례관리 기간·자격, ② 본인명의 계좌* 여부, ③ 연락처 등
 *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 **(조치 방법)** 제출서류 및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청인 또는 추천 지원시설에 필요 서류 제출 안내·징구

3) 결정사항 통지

- **(통지 방법)**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는 결정 내용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관련 통지서」(서식4)로 신청인 및 추천 지원시설에 통지
 ※ 신청인이 통지서 발송 전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발송 불필요
- 서면 통지(우편)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통지 사항)** 결정 내용, 급여·서비스 및 사례관리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통지 기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나. 수당 지급

1) 지급 기간

- 신청자의 지원시설 퇴소일이 속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자는 지원시설 퇴소일('월' 기준)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퇴소자립지원수당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하며, 지자체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 예시) 퇴소일이 7월 25일인 경우, 퇴소한 달은 7월이므로 9월 말까지 신청·접수 시 7월분까지 소급하여 수당 지급
- ※ 퇴소 후 2개월이 초과된 뒤 신청한 경우,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지급(퇴소일이 속한 달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달까지)

2) 지급 방법

- 지급 결정 대상자(신청자) 명의 금융계좌에 직접 개별 입금
 - * 신청자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산 배정 및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급

다. 환수

1) 환수 주체

-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지급 건을 집행한 시·도 또는 시·군·구

2) 환수 대상

- 수급권이 상실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 지급정지 기간 중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환수 절차

- 환수 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환수 고지(공문으로 본인에게 우편 발송) → 환수

- 환수 대상 확인 시 조치 사항
 -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 관리 대장(서식10)에 기록 후 환수 결정 처리
- 환수 여부 결정 기한
 - 본인 신고 또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3 수급자 관리

가. 수급자 관리 개요

1) 관리 주체

-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 시·도는 월 1회 이상 관할 시·군·구의 관리 현황을 점검

2) 관리 사항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변동,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3) 관리 방법

- 수급자의 신고, 확인조사, 공적자료 연계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 변동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수급자의 거주지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하여 매월 수당 지급 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
- 공적자료를 우선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에게 소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 실시
- 변동 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별도 보관

나. 유형별 관리 방법

1) 지급 정지

○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 (적용 시점) 교정 시설 입소일
- (지급 정지)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 (친·인척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수용증명서)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시설 퇴소자에게 통지
 - ※ 필요 시 공문서로 입소 교정시설에 수용확인 요청 또는 관할 검찰청·법원에서 발행한 '법원판결문'을 발급받아 '선고일 및 형의 종류' 확인

○ 행방불명 및 실종 등

- (적용 시점) 경찰관서 등에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 (지급 정지) 경찰관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관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 단,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생사 여부 확인 시 지급 정지 제외
- (확인 및 조치)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접수한 후 지급 정지 처리 및 시설퇴소자 주소지로 통지
 - * 법원 : 실종·부재 청구 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취소 신고증
 - 경찰서 : 신고 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등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적용 시점)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
- (지급 정지)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친·인척 등)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 징구, 지급정지 처리 및 시설퇴소자 주소지로 통지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

○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 (적용 시점) 주민등록상 거주주소 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
- (지급 정지)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거주 여부 확인 후 지급 정지 처리하고 수급자 및 사례 관리 지원시설 주소지로 통지

2) 수급권 상실

○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 (적용 시점) 직접 신고일 또는 확인한 날
- (지급 기준)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를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 결정 처리하고 수급자 및 사례 관리 지원시설 주소지로 통지

○ 난민 인정 취소, 난민 인정 결정 철회

- (적용 시점) 난민 인정 취소일, 난민 인정 결정 철회일
- (지급 기준) 난민 인정 취소·난민 인정 결정이 철회된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법무부 ‘난민인정불처분’의 취소일 또는 철회일을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 결정 처리하고, 수급자와 사례관리 중인 보호시설로 주소지 통지

○ 사망

- (적용 시점)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일

- (지급 기준)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사망의심자'인 경우 실제 사망여부 확인(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시스템 사망신고 여부 등 공적자료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결정처리 및 수급자 주소지로 통지
 - *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 환수 조치

다. 수급권 변동사항 통지

1) 통지 방법

- 지급 정지 또는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정지 또는 상실 내용을 명시한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관련 통지서(서식4)를 작성 후 우편발송(원칙)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 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2) 통지 내용

- 결정 내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 신청 안내 등
- 실종신고 취소, 국적 회복 등 수급권 상실 사유, 교정시설 퇴소 등 수급권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이의신청 안내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라. 수급자 사례관리

1) 목적

-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수급 중인 퇴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 및 지원

2) 관리 주체 및 기간

- (사례관리) 수당 신청을 추천한 퇴소 당시 지원시설
- (지도 및 감독) 수급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사례관리 기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기간

3) 관리 내용

- 수급자의 사회 정착 및 자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도·지원
 - 주거마련 지원(공공주택 연계 등), 독립생활 지도, 진로 지도, 학업·취업 및 구직 연계, 경제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연계 등

* 수급자 사례 관리 시 지원시설 퇴소자 사후 관리서(서식9) 양식 활용

< 수급자격 변동 여부 모니터링 및 조치 >

-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지원시설은 수급자의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변동 있을 시는 즉시 관할 지자체(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유선 연락하고, 해당 수급자에게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

* 거주지 변경,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마. 현황 관리

1) 관리 주체

- 수급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관리 내용

- 수급자의 인적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기록 관리
 - 자립지원수당 신청, 접수, 결정 및 지급 현황 관리
 - 대상자 추천·접수 및 결정사항, 이관사항, 변경사항 등
 - 수당 지급 현황, 예산 관리 현황 등

* 성착취·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서식10)

참고 자료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1. 신청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 10%;">시설 퇴소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width: 30%;"></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 <td rowspan="2" style="width: 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E-mail</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화 : 휴대전화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좌번호</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은행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예금주:)</td> </tr> </table>					시설 퇴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계좌번호	은행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예금주:)	
시설 퇴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mail																			
	주 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계좌번호	은행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예금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관련 통지방법</td> <td>[] 서면(우편)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td> </tr> </table>					관련 통지방법	[] 서면(우편)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관련 통지방법	[] 서면(우편)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2. 추천 지원시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40%;">지원시설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td> <td style="width: 20%;"></td> </tr> <tr> <td>시설장명</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명, 연락처</td> <td></td> </tr> <tr> <td>시설 주소</td> <td colspan="3">()</td> </tr> <tr> <td>E-mail</td> <td colspan="3"></td> </tr> </table>					지원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시설장명		담당자명, 연락처		시설 주소	()			E-mail			
지원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시설장명		담당자명, 연락처																		
시설 주소	()																			
E-mail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본인은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시·도, 시·군·구)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이용사무(이용목적) :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주소지 및 입금계좌 확인 (최초 지급 결정 시 및 지급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지원시설 관계자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 수급기간 중 신고의무(수급자격의 상실, 정지, 변경 등)를 다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유)지원시설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사항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첨부서류	1. 자립 계획서 2. 지원시설 입·퇴소 확인서 3.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4.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5. 지원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사항		동의여부 (동의할 경우 ✓ 체크)
1. (중복수급 불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은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아동복지법) 및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청소년복지지원법) 수령 이력이 있더라도 중복수급으로 간주합니다.		[]
2.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퇴소자립지원수당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소자립지원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3. 퇴소자립지원수당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신청자의 주소지 시·군·구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5.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본 수당 신청을 추천한 퇴소 당시 지원시설에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사례관리 등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6.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자·추천시설] [처리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 청 · 추 천 (신청자 및 해당 수당 신청을 추천한 지원시설) → 확 인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 결 정 (신청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 신청결과 통지		

<u>자 립 계 획 서</u>					
작성자 성명 (신청자)		상담자 성명 (시설 종사자)		작성일자	년 월 일
과거 경험(학업, 취업준비 등 자립준비 중심)					
현재 상황 및 본인의 자립 목표		* (상황) 일상생활, 주거, 경제적·사회적 상황, 기타 현재 상황 작성 (목표) 근시일(향후 3~5년) 내 도달하고자 하는 현실성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의 자립 목표 달성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퇴소자립지원수당 사용 계획 포함)		* 일상생활,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등), 학업 및 취업 등 경제적·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및 퇴소자립지원수당의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향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련 기관의 사례관리(상담, 지도,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자필 작성, 필요시 별지 추가하여 작성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퇴소 확인서

퇴 소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용 도			
	제출처			
입·퇴소 시설 및 기간	시 설 명			
	시설 입소 기 간	20 . . . ~ 20 . . . 까지 (개월 일)		
	시설 퇴소 사 유			
위와 같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착취·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기관 소 재 지 전화번호 지원시설·주거지원시설명 (기관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군·구청장 귀하				

※ '시설명' 란에는 지원시설명 또는 주거지원시설명을 기재

[서식4]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관련 통지서

[1 면]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 변경·정지·상실 통지서

신청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비고 * 처리기한 경과 사유 등

☐ 적합 결정

- 귀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에게 지급 예정 퇴소자립지원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 퇴소자립지원수당은 시설을 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 대상자는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 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 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 대상 제외

제외 사유	☐ 수급자격 검토 결과 수급 자격 미인정 ☐ 기타()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여건 변동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정지·상실

[] 변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거주지 변동 ☐ 기타()	
[] 정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선고)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상 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기타()	

1.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주소지 변경 또는 지급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자립지원 사례관리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선정 심사 기준(예시)

신청인 정보	성명	○ ○ ○
	생년월일	년. 월. 일. (00세)
	입·퇴소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____개월)
신청 내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월 1회 50만원, 최장 12개월)	

심사내용			
심사항목		결과	
신청 자격	▪ 시설 입·퇴소 당시 나이 및 입소기간 등	적합	부적합
심사 기준	▪ 자립계획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자립에 대한 의지 포함)	적합	부적합
선정 제외 대상	▪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해당	미해당
종합의견		심의의견	
		가(可)	부(否)

상기인의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 . . .			
직위	성명	서명	비고
위원			

[서식6]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관련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관련 처분 내용		대 상	[] 퇴소자립지원수당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 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서식7]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

<u>퇴소자립지원수당 계좌 변경 신청서</u>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수당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수당 지급 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위 변경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입금계좌 정보 ※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성착취 피해 아동 · 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계좌 변경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시·도, 시·군·구)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통장사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후관리 담당자	성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 전화 ☐ e-mail(사이버) ☐ 기타 _____			
사후관리 기간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기간 (최장 12개월)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퇴소자립지원수당) 본 동의서는 시설 퇴소 후 1년간 사후관리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 내용은 내부자료로 보관된다. -(퇴소자립지원수당) 본 동의서는 시설 퇴소 후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 기간(최대 1년) 동안 사후관리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 내용은 내부자료로 보관된다. ※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퇴소 후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상담원의 역할과 의무	1. 상담원은 신청인이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음을 알릴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2. 상담원은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내담자와 함께 공유해야 하며, 내담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상담원은 신청인이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상담원은 개인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고	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신청인이 상호 협의한 내용이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인과 상담원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동의확인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기와 같이 동의합니다. 대상자 지원시설장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사후 관리서

작성자명:

작성일: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사후관리 담당자	담당자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 전화 ☐ e-mail(사이버) ☐ 기타 _____			
사후관리 내용				
기타 특이사항 등				

[서식10]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퇴소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

① 관리 (발급) 번호	②추천 현황						③결정사항				④이관사항		⑤변경사항		⑥수당지급 현황(일자, 지급관청)								
	수급자			추천 지원시설																			
	퇴소 일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지, 연락처	추천 일자	시설명	담당자, 연락처	시군구 명	담당자	결정 일자	결정 사항	이관 일자	시군구 명	일자	내용	1회차	2회차	3회차	...	12 회차			
	'26.1.5	홍길동	123456-7890123	서울 용산구 가나다로 12	'26.1.10	000 청소년 지원시설	서울 용산구	이용산	'21.1.20.	적합	'26.12.1	경기도 광명시				'26.2.20	'26.3.20	'26.3.420		'23.12.20.			
				000-0000-0000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경기도				
	'26.3.4	이순신														신청 지연	신청 지연	'21.5.20		'24.2.20.			

(작성요령)

- ① 관리(발급)번호 : 시설입·퇴소확인서(최종시설 발급)의 관리(발급)번호
- ② 추천 현황 :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한 수급자 및 추천 지원시설 현황
- ③ 결정 사항 : 추천을 접수한 시군구의 결정사항
- ④ 이관 사항 : 지급결정 이후 수급자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수당지급 업무를 이관한 일자와 관할 시군구 (필요 시 칸 추가)
* 이관하는 시군구는 이관 직전까지의 현황을 이관 받는 시군구로 송부
- ⑤ 변경 사항 :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지급정지, 계좌변경 등) 일자 및 내용(필요시 칸추가)
- ⑥ 수당지급 현황 : 회차별 수당 지급일자 및 지급 관청

신청·상담 방법	①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대면 상담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로, 비대면 상담은 공단 노후준비 운영부로 전화하여 상담 신청 ※ 상담 방식별 연락처 (비대면 상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운영부(063-713-5961) (대면 상담)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붙임1] • 온라인 신청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csa.nps.or.kr)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진단·상담 서비스 > 노후준비상담 예약 > 노후준비상담 예약 > 지역·지사, 방문일자 및 희망상담시간 선택하여 상담예약신청 ※ 공단 전문상담사의 상담 일정에 따라 상담 일자·시간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희망 상담일로부터 최소 1달 전에 상담 신청 필요 ② 상담 방법 • 비대면 상담 : 공단 전문상담사와 온라인 실시간 상담 방식으로 진행 • 대면 상담 : 공단 거점지사를 방문하여 전문상담사와 대면 상담 방식으로 진행 ※ 상담 신청은 본인 외 지원시설 관계자가 신청은 가능하나, 상담은 퇴소자립지원 신청자 본인이 받아야 함(대리상담 불가)				
상담내용	<table border="1" data-bbox="328 1330 1420 1765"> <tr> <td data-bbox="328 1330 512 1559">재무상담</td><td data-bbox="512 1330 1420 1559"> •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주택자금 마련, 창업준비자금 마련 등 재무 목표 수립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자산형성, 위험관리 등 실천과제 제시 • 실천과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북 등을 통한 추가 정보제공 </td></tr> <tr> <td data-bbox="328 1621 512 1765">사후관리 (선택)</td><td data-bbox="512 1621 1420 1765"> • 필요시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재무목표 및 실천과제 재설정 </td></tr> </table> ※ 재무상담은 공단 노후준비서비스의 일환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 관계 분야에 대한 진단 추가 제공 ※ 재무상담 완료 후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발급(분실 등 확인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문의)	재무상담	•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주택자금 마련, 창업준비자금 마련 등 재무 목표 수립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자산형성, 위험관리 등 실천과제 제시 • 실천과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북 등을 통한 추가 정보제공	사후관리 (선택)	• 필요시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재무목표 및 실천과제 재설정
재무상담	•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주택자금 마련, 창업준비자금 마련 등 재무 목표 수립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자산형성, 위험관리 등 실천과제 제시 • 실천과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북 등을 통한 추가 정보제공				
사후관리 (선택)	• 필요시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재무목표 및 실천과제 재설정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현황(대면 상담)

광역시도	지사명	연락처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935	종로, 중구, 용산, 은평, 고양, 덕양
	동대문중랑지사	02-920-0536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노원지사	02-2112-2808	도봉, 노원, 의정부, 포천, 철원
	고양일산지사	031-920-5460	고양, 일산, 파주, 김포, 강화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119	강남, 역삼, 서초
	송파지사	02-3433-5875	송파, 강동, 하남
	관악지사	02-6934-2096	관악, 동작
	구로금천지사	02-2085-1515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지사	02-2086-7160	강서, 양천
인천광역시	남동연수지사	032-451-0706	남동, 연수, 남인천, 서인천
경기도	경인지역본부	031-229-4120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처인기흥지사	031-288-1307	처인, 기흥, 경기 광주, 이천, 여주
	안양과천지사	031-420-2099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안산, 시흥
	분당지사	031-778-0201	분당, 수정, 중원, 수지, 북수원
	부천지사	032-610-2367	부천, 부평, 계양, 광명
	남양주지사	031-523-6373	남양주, 구리, 양평, 성동, 광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사	033-259-7774	춘천, 홍천, 강릉, 삼척, 원주
	강릉지사	033-640-9305	강릉, 삼척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지역본부	044-715-1860	세종, 서청주, 공주, 부여
대전광역시	서대전지사	042-480-4907	서대전, 동대전
	북대전지사	042-670-1065	북대전, 옥천

광역시도	지사명	연락처	관할 구역
충청북도	동청주지사	043-251-5136	동청주, 충주
충청남도	천안지사	041-550-8996	천안, 아산
	예산홍성지사	041-630-8172	예산, 홍성, 서산, 태안, 보령
광주광역시	광주지역본부	062-958-2028	광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주지사	063-270-5369	전주, 완주, 진안, 남원, 순창
	익산군산지사	063-850-0392	익산, 군산, 정읍
전라남도	목포지사	061-240-3371	목포, 나주, 해남
	순천지사	061-729-3045	순천, 여수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본부	053-589-4546	서대구, 달성, 고령
	대구수성지사	053-750-9150	수성, 동대구, 경산, 청도
경상북도	구미지사	054-450-8571	구미, 안동, 영주, 봉화, 문경, 김천, 성주
	포항지사	054-280-0811	포항, 경주, 영천
부산광역시	부산지역본부	051-797-7223	중부산, 서부산, 북부산, 사상, 동래, 금정
	동부산지사	051-610-6327	동부산, 남부산
울산광역시	남울산지사	052-226-2190	울산
경상남도	창원지사	055-278-9093	창원, 마산
	김해밀양지사	055-320-8410	김해, 밀양, 양산
	진주지사	055-760-0616	진주, 통영, 사천, 남해, 거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064-720-4145	제주, 서귀포